
가톨릭꽃동네대학교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2025년 3월



가톨릭꽃동네대학교
CATHOLIC KKOTTONGNAE UNIVERSITY

Contents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1. 주요 변경사항	1
2. 모집단위별 모집인원	2
3. 모집시기별 전형방법	
가. 수시모집 전형방법	3
나. 수시모집 수능 최저학력기준	3
다. 정시모집 전형방법	4
4. 전형별 지원자격	
가. 수시모집 전형별 지원자격	5
나. 정시모집 전형별 지원자격	7
5. 학교생활기록부 교과성적 반영 방법	
가. 학교생활기록부 교과성적 반영 비율 및 방법	8
나. 교과성적 산출 방법	9
6. 정시모집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 방법	12
7. 학교폭력 조치사항 감점 방법	13
8.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시행계획	14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은 입학정원 조정 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니, 홈페이지 및 입학지원서 작성 시 반드시 모집요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주요 변경사항

구분	2026학년도	2027학년도	
수시 모집	모집단위별 모집인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부교과(만학도전형) - 자율전공학부 30명 • 학생부교과(휴먼리더면접전형) - 간호학과 13명 • 학생부교과(가톨릭지도자추천전형) - 간호학과 1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부교과(만학도전형) - 자율전공학부 00명(제한 없음) • 학생부교과(휴먼리더면접전형) - 간호학과 10명 • 학생부교과(가톨릭지도자추천전형) - 간호학과 13명
	전형별 전형요소 반영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부교과(지역인재전형) - 학생부교과 100% • 학생부교과(지역인재-경제배려대상자전형) - 학생부교과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부교과(지역인재전형) - 학생부교과 60% + 면접 40% • 학생부교과(지역인재-경제배려대상자전형) - 학생부교과 60% + 면접 40%
	학생부 교과성적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선택과목 성취도 반영 - A : 2등급 - B : 4등급 - C : 6등급

2. 모집단위별 모집인원

(단위 : 명)

모집단위	입학 정원	수시												정시 나군	
		정원 내						정원 외							정원 내 수능
		학생부교과						학생부교과				기타	수시 모집 합계		
		일반 학생	휴먼 리더 면접	가톨 리지 도자 추천	지역인재		특성 학교 교	만학 도 및 자립 지원	경제 배려 대상 자	농어 촌	특수 교육 대상 자	만학 도		재외 국민 과 외국 인	일반 학생
일반	경제 배려 대상 자														
간호학과	78	15	10	13	18	2	5	-	4	1	-	-	2 이내	68	15
자율전공학부	30	18	-	3	-	-	-	10	-	-	2	제한 없음		31	0
계	108	33	10	16	18	2	5	10	4	1	2	제한 없음	2	99	15

※ 수시모집(정원내·외)에서 미충원될 경우에는 정시모집으로 이월(단, 재외국민과 외국인 전형은 제외)

※ 정원외 학생부교과(만학도전형)은 입학정원 제한 없음

※ 2025학년도 미충원 이월 모집 (자율전공학부 1명)

3. 모집시기별 전형방법

가. 수시모집 전형방법

전형유형	모집 단위	전형 방법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전형총점	
			학생부교과 (최고점/최저점)	면접 (최고점/최저점)		
정원내 학생부 교과	전체	일반학생전형	일괄	100% [최고 500점/최저 50점]	-	500점
		휴먼리더면접전형	일괄	60% [최고 300점/최저 30점]	40% [최고 200점/최저 20점]	500점
		가톨릭지도자추천전형	일괄	60% [최고 300점/최저 30점]	40% [최고 200점/최저 20점]	500점
		지역인재전형	일괄	60% [최고 300점/최저 30점]	40% [최고 200점/최저 20점]	500점
		지역인재-경제배려대 상자전형	일괄	60% [최고 300점/최저 30점]	40% [최고 200점/최저 20점]	500점
		특성화고교전형	일괄	100% [최고 500점/최저 50점]	-	500점
		만학도 및 자립지원전형	일괄	100% [최고 500점/최저 50점]	-	500점
정원외	학생부 교과	경제배려대상자전형	일괄	100% [최고 500점/최저 50점]	-	500점
		농어촌전형	일괄	100% [최고 500점/최저 50점]	-	500점
		특수교육대상자전형	일괄	100% [최고 500점/최저 50점]	-	500점
		만학도전형	일괄	100% [최고 500점/최저 50점]	-	500점
	기타	전체	일괄		100% [최고 500점/최저 50점]	500점

나. 수시모집 수능 최저학력기준 : 없음

다. 정시모집 전형방법

전형유형			모집 단위	전형 방법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전형총점
					수능 (최고점/최저점)	학생부교과 (최고점/최저점)	
정원 내	수능	일반학생전형	전체	일괄	100% [최고 500점/최저 0점]	-	500점
		지역인재-경제배려대 상자전형			100% [최고 500점/최저 0점]	-	500점
정원 외	수능	경제배려대상자전형			100% [최고 500점/최저 0점]	-	500점
		농어촌전형			100% [최고 500점/최저 0점]	-	500점
	학생부 교과	특수교육대상자전형			-	100% [최고 500점/최저 50점]	500점
		만학도전형			-	100% [최고 500점/최저 50점]	500점

※ 정시모집 정원의 전형은 수시 미모집 인원 발생 시 모집 시행

4. 전형별 지원자격

가. 수시모집 전형별 지원자격

구분	전형유형	지원자격
수시	학생부교과 (일반학생전형)	고등학교 졸업자(2027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학생부교과 (휴먼리더면접전형)	고등학교 졸업자(2027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학생부교과 (가톨릭지도자 추천전형)	고등학교 졸업자(2027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가톨릭 사제 또는 현직 수도회 장상(총원장, 관구장, 지부장)의 추천을 받은 자 나. 출신 가톨릭계 고등학교 교사의 추천을 받은 자(지원자의 종교와는 무관함)
	학생부교과 (지역인재전형)	2016년 2월 이후 고등학교 졸업자(2027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로서 학생 본인이 입학일부터 졸업일까지 충청권(충청북도,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3년)을 이수한 자
	학생부교과 (지역인재-경제 배려대상자전형)	2016년 2월 이후 고등학교 졸업자(2027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로서 학생 본인이 입학일부터 졸업일까지 충청권(충청북도,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3년)을 이수한 자로서,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호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학생부교과 (특성화고교전형)	2016년 2월 이후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2027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로서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특성화고등학교의 졸업자(2027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나. 종합고 졸업자(2027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중 실업계열 이수자 다. 마이스터 고등학교 졸업자(2027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 자연현장 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 대안학교 및 검정고시 출신자는 지원할 수 없음
	학생부교과 (만학도 및 자립지원전형)	고등학교 졸업자(2027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만학도: 입학 연도(2027년 3월 1일) 기준으로 만 30세 이상인 자 나. 자립지원 대상자: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가정위탁보호 중인 자 ②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자 ③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지나지 아니한 자

구분	전형유형	지원자격
수시	학생부교과 (경제배려 대상자전형)	고등학교 졸업자(2027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호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학생부교과 (농어촌전형)	고등학교 졸업자(2027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로서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른 읍·면(농어촌) 지역 또는 「도서·벽지 교육 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지역 소재 중·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6년)을 이수하고 지원자와 부모 모두가 중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읍·면(농어촌) 지역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한 자 나.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른 읍·면(농어촌) 지역 또는 「도서·벽지 교육 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지역 소재 초·중·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12년)을 이수하고 지원자 본인이 초등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읍·면(농어촌) 지역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한 자 ※ 농어촌학생 유형은 읍·면(농어촌) 지역 또는 도서·벽지 지역 소재 특수목적고(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등학교) 출신자는 지원할 수 없음
	학생부교과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고등학교 졸업자(2027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을 필한 자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에 의한 상이 등급자(국가보훈처 등록)
	학생부교과 (만학도전형)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입학 연도(2027년 3월 1일) 기준으로 만 30세 이상인 자
	재외국민과 외국인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에 의한 자격요건에 의함

나. 정시모집 전형별 지원자격

구분	전형유형	지원자격
정시	수능 (일반학생전형)	고등학교 졸업자(2027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한국사 영역의 성적을 통보받은 자에 한함)
	수능 (지역인재-경제배려대상자전형)	2016년 2월 이후 고등학교 졸업자(2027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로서 학생본인이 입학일부터 졸업일까지 충청권(충청북도,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3년)을 이수한 자로서,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며,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한국사 영역의 성적을 통보받은 자에 한함)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호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수능 (경제배려대상자전형)	고등학교 졸업자(2027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며,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한국사 영역의 성적을 통보받은 자에 한함)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호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수능 (농어촌전형)	고등학교 졸업자(2027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로서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며,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한국사 영역의 성적을 통보받은 자에 한함) 가.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른 읍·면(농어촌) 지역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지역 소재 중·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6년)을 이수하고 지원자와 부모 모두가 중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읍·면(농어촌) 지역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한 자 나.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른 읍·면(농어촌) 지역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지역 소재 초·중·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12년)을 이수하고 지원자 본인이 초등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읍·면(농어촌) 지역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한 자 ※ 농어촌학생 유형은 읍·면(농어촌) 지역 또는 도서·벽지 지역 소재 특수목적고(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등학교) 출신자는 지원할 수 없음
	학생부교과 (특수교육대상자전형)	고등학교 졸업자(2027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을 필한 자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에 의한 상이 등급자(국가보훈처 등록)
학생부교과 (만학도전형)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입학 연도(2027년 3월 1일) 기준으로 만 30세 이상인 자	

※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대학수학능력시험 ‘한국사’ 과목 활용 권고 (최저학력기준 설정, 가산점 반영 등)

5. 학교생활기록부 교과성적 반영 방법

가. 학교생활기록부 교과성적 반영 비율 및 방법

1) 학년별 반영 비율

모집단위	학년별 반영 비율			교과	비교과	비고
	1학년	2학년	3학년			
간호학과	40%	30%	30%	100%	-	- 졸업(예정)자 : 3학년 1학기까지 성적 반영
자율전공학부	학년별 가중치 없음					

2) 학년별 반영 교과

모집단위	반영교과	반영과목 수	비고
간호학과	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 사회, 과학 교과 중 학년별 상위 3개 과목씩 총 9개 과목 (진로선택과목 포함)	9	석차등급 활용
자율전공학부	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 사회, 과학 교과 중 상위 8개 과목 (진로선택과목 포함)	8	석차등급 활용

3) 산출방법

- 석차등급과 이수단위 수를 활용하여 산출
- 석차등급(석차, 평어 등)이 표시되는 과목에 한해 반영함
- [간호학과]의 경우 학년별 반영과목이 3개 미만일 경우 부족한 과목은 최저점수(9등급/단위2) 적용
- [자율전공학부]의 경우 반영과목 수가 부족한 경우 부족한 과목은 최저점수(9등급/단위1) 적용
- 진로선택과목의 성취도 점수는 해당 등급으로 변환하여 성적 산출

4) 석차등급 점수표

석차등급	1	2	3	4	5	6	7	8	9
등급점수	10	9	8	7	6	5	4	3	1
누적비율	4	11	23	40	60	77	89	96	100

5) 진로선택과목 성취도 반영

성취도	A	B	C
석차등급	2등급	4등급	6등급

나. 교과성적 산출방법

1) 2027년 2월 졸업예정자 및 2008년 2월 ~ 2026년 2월 졸업자

모집단위	교과성적 반영비율	교과성적 산출 방법	교과성적 점수	
			최고점	최저점
간호학과	100%	$\{(1\text{학년 등급점수} \times 20) + (2\text{학년 등급점수} \times 15) + (3\text{학년 등급점수} \times 15)\} \times \text{이수단위 비율} \times 1$	500	50
	60%	$\{(1\text{학년 등급점수} \times 20) + (2\text{학년 등급점수} \times 15) + (3\text{학년 등급점수} \times 15)\} \times \text{이수단위 비율} \times 0.6$	300	30
자율전공 학부	100%	전 학년 등급점수 $\times 50 \times 1$	500	50
	60%	전 학년 등급점수 $\times 50 \times 0.6$	300	30

- 등급점수 산출 방법

등급점수 산출 방법
$\Sigma(\text{석차등급 점수} \times \text{이수단위}) / \text{이수단위의 합}$

- 이수단위 비율

구분	이수단위 비율
반영과목 전체 이수단위의 합 ≥ 27	1
반영과목 전체 이수단위의 합 < 27	반영교과 전체 이수단위의 합 $\div 27$

2) 2007년 2월 이전 졸업자

가) 석차가 있는 경우

○ 과목석차 백분율별 석차등급 환산법

과목석차 백분율	4이내	4초과 ~11이내	11초과 ~23이내	23초과 ~40이내	40초과 ~60이내	60초과 ~77이내	77초과 ~89이내	89초과 ~96이내	96초과 ~100이내
석차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 과목석차가 있는 경우의 성적 산출

- 과목석차 백분율에 의해 석차등급을 부여하고, 기준비율에 따라 등급으로 환산한 후 석차등급표에 따라 점수를 산정

동석차 인원이 있는 경우	$[(\text{과목석차} + (\text{동석차 인원수} - 1) / 2) / \text{과목재적수}] \times 100$
동석차 인원이 없는 경우	$\text{과목석차} / \text{과목재적수} \times 100$

○ 전체 석차만 있는 경우의 성적 산출

- 석차 백분율에 의해 석차등급을 부여하고, 기준비율에 따라 등급으로 환산한 후 석차등급표에 따라 점수를 산정

나) 석차가 없는 경우

○ 과목석차 등급 점수(평어적용)

평어성적	수	우	미	양	가
석차등급	2등급	4등급	5등급	7등급	9등급

3) 검정고시 출신자의 성적반영 방법

○ 교과성적 변환점수표

교과성적 반영비율	과목별 점수	100~95	94~90	89~85	84~80	79~75	74~70	69~65	65~0
100%	환산점수	450	400	350	300	250	200	150	50
60%	환산점수	270	240	210	180	150	120	90	30
	석차등급	2	3	4	5	6	7	8	9

○ 과목별 반영비율

모집단위	국어	영어	사회	수학	과학	총계
간호학과	15%	25%	10%	25%	25%	100%
자율전공학부	25%	25%	25%	15%	10%	100%

4) 외국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교과) 반영 방법

- 반영교과 : 전 학년 전체 교과목
- 교과성적 : $\Sigma\{\text{과목별 교과성적 변환점수의 합} / \text{전체 교과목 수}\} \times \text{학년별 반영비율}$
- 환산점수
 - 등급(Grade) 환산 점수

교과성적 반영비율	교과등급 (Grade)	A+, A, A-	B+, B, B-	C+, C, C-	D+, D, D-	D- 미만
100%	환산 점수	400	350	300	200	50
60%	환산 점수	240	210	180	120	30
석차등급		2	4	5	7	9

- 원점수(백분위) 환산 점수

교과성적 반영비율	과목별 점수	100~95	94~90	89~85	84~80	79~75	74~70	69~65	65~0
100%	환산점수	450	400	350	300	250	200	150	50
60%	환산점수	270	240	210	180	150	120	90	30
교과성적 등급		2	3	4	5	6	7	8	9

6. 정시모집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 방법

가. 수능 성적 반영 요소

- 1) 대학수학능력시험의 활용 지표 : 백분위 점수

나. 수능 성적 반영 방법

모집단위	반영영역 및 비율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한국사
모든 모집단위	30%(택1)		30%	40% (택2, 각20%)	응시자격

다. 수능 영역 평가방법

- 1) 국어, 수학, 탐구 : 상대평가(점수제공 : 백분위, 표준점수, 등급)
 2) 영어영역 환산 점수

영어등급	1	2	3	4	5	6	7	8	9
환산 (백분위 점수)	95	84.5	74.5	64.5	54.5	44.5	34.5	24.5	9.5

3) 산출 방법

모집단위	반영비율	산출방법
모든 모집단위	100%	$\Sigma\{(\text{본인 취득 백분위 점수}) \times \text{과목별 반영비율}\} \times 5$

※ 소수점 처리 방법 : 계산과정에서는 반올림하지 않으며, 수능 성적 산출 이후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7. 학교폭력 조치사항 감점방법

-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록이 있을 경우, 교과 / 수능성적 환산점수 감점하여 반영
- 동일 조치사항의 중복횟수가 있을 경우 조치사항별 감점 X 횟수(최대 3회)로 반영
- 다수의 조치사항이 있을 경우 합산하여 감점

반영 전형	조치사항	감점항목 (전형별 총점)	감점
모든 전형	1호(서면사과)	학생부교과/수능성적 환산점수	5
	2호(피해학생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10
	3호(학교에서의 봉사)		15
	4호(사회봉사)		20
	5호(전문가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25
	6호(출석정지)		30
	7호(학급교체)		35
	8호(전학)		40
	9호(퇴학처분)		45

8.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시행계획

가. 모집단위별 모집인원

(단위 : 명)

모집단위	입학 정원	정원 외			
		기타			
		재외국민 및 외국인(2% 이내)	전 교육과정 이수자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북한이탈주민
간호학과	78	2 이내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자율전공학부	30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계	108	2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나. 전형별 전형요소 반영비율

전형유형			모집 단위	전형 방법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전형총점
					학생부교과 (최고점/최저점)	면접 (최고점/최저점)	
정원 외	기타	재외국민과 외국인 모든 전형	전체	일괄		100% [최고 500점/최저 50점]	500점

다. 전형별 지원자격

전형유형	지원자격
재외국민 및 외국인 (2% 이내)	<p>우리나라 학제(12학년)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자로서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p> <p>가. 부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직조건 : 부모 중 한 명이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 국외 근무/사업/영업하여야 함 - 체류조건 : 부모 중 한 명이 국외 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그의 배우자 및 자녀(학생)와 함께 국외에 체류하여야 함 (※ 자녀(학생)의 재학기간 중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2/3이상을 배우자와 함께 해당 국가에서 체류하여야 함) <p>나. 자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학조건 : 부모 중 한 명이 국외 근무/사업/영업하는 기간 동안, 부모가 국외 근무/사업/영업하는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하여야 함 (※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단,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 체류조건 : 본인의 재학기간 중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3/4이상을 부모가 국외 근무/사업/영업하는 국가에서 체류하여야 함

전형유형	지원자격
전 교육과정 이수자	<p>국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국내 초·중등학교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전 교육과정 이수자</p> <p>※ 국외 동일 학년제에서 초·중·고 전 과정을 이수한 경우, 이수 연한이 12년이 되지 않더라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p> <p>※ 학년제가 다른 2개 이상 학교의 경우 우리나라 학년제에 준하여 12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 단, 12년 미만 이수 시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의 기간만큼은 해당국 대학에서 이수한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 이수로 인정)</p> <p>※ 학제가 다른 2개 학교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한 자가 전·편 입학하는 과정에서 학제 차이로 불가피하게 총 재학기간이 누락된 경우 1학기 (6개월) 이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p>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p>국내·외 교육기관에서 한국의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고등학교 졸업자(2027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로서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p> <p>※ 학생이 우리나라 고교과정과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부모와 학생 모두가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p> <p>※ 한국 국적을 포함한 복수국적자 또는 무국적자는 제외함</p>
북한이탈주민	<p>「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북한이탈주민으로서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자(2027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p>

※ 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등의 학력인정방법은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지원 자격에서는 인정하지 않음 (단,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6호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국내 검정고시는 인정함)



입학상담	전화 : 043) 270-0100, 0119 FAX : 043) 270-0103
홈페이지	https://www.kkot.ac.kr
주소	(우편번호: 28211)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상삼길 133, 가톨릭꽃동네대학교 교무입학처 입학관리과
